2022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2년 10월 27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이 한 녕 금융결제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김 용 식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36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제3호 및 제68조에 의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동 조치가 가지는 개별적 의미보다는 통화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함의를 진솔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정책 시행의 배경과 효과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시장 유동성 사정이 다소 위축된 근저에 담보 이슈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 조치가 이 같은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되어 금융시장을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이로 인해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음.

일부 위원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장기간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시장에서 유동성 위축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불안 심리가 나타난 측면이 있으므로 당행이 한시적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회사채시장과 CP시장을 구별해서 살펴봐야 하며, 동시에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불일치도 고려하는 등 시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 여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나 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시장이 곤란한 상황인지 질의하 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시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들이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시장 기능 위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당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투자도 대폭 확대되는 등 특이요인이 있었음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일부 위원은 회사채 스프레드(spread)가 상승하면서 크레딧(credit) 이슈가 나타 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현재로서는 은행의 건전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시장기능의 일부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담보 여력 부족으로 인한 자산매각 등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고유동성자산 확보 이슈에는 동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현재 고물가에 대응하여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와 물가간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는 당행이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늘 제안된 조치들은 금리정책 기조와는 별개이며, 지금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함께 새로 담보로 추가될 수 있는 채권들의 손실 가능성과 신용리스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당행의 담보 위험관리 등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위원협의회 논의내용에 대한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과거 코로나가 국내외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2020년 초 적격담 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때 은행들의 담보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시에는 담보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부문 전체에 걸쳐 발생한 신용경색에 대응해 완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담보 구성 비중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번 조치 이후 담보증권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 하고 보고해주기를 당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 <의안 제37호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 및 제68조에 의거 금융시장에 대한 금리파급 경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상증권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ECB 및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자금을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또한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과 같은 유동성 위축 상황이 지속된다면 증권 사들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현재 은행들은 건전성 및 유동성 관련 이슈가 크지 않지만 증권 사의 경우 PF-ABCP 채무보증 등 추가적 유동성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담보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향후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인 판단기준 하에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 변화에 유의해서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한시적 조치 기한을 우선 3개월로 정해 운용해보고 3개월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3개월 운용 후 필요 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

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위원협의회 논의내용에 대한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향후 한국은행이 RP매입을 통해 증권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적격담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 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배젓의 원칙(bagehot priciple)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생략)

# <의안 제38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제10호 및 제81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3개월간 유예하고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협의회 논의가「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개정(안)」,「공개시장운영 규정 개정(안)」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담보 범위 확대 시한의 적정성 등 위원의 의견이 모두 앞서 언급되었으며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보고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

# 나. 기타 사항

위원들은 2023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2023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예정일

1월		2월		3월	
1.13(금)	1.26(목)	2.9(목)	2.23(목)	3.9(목)	3.23(목)
 4월		5월		6월	
4.13(목)	4.27(목)	5.11(목)	5.25(목)	6.8(목)	6.21(수)
7월		8월		9월	
7.13(목)	7.27(목)	8.10(목)	8.24(목)	9.14(목)	9.26(화)
10월		11월		12월	
10.19(목)	10.26(목)	11.9(목)	11.30(목)	12.14(목)	12.28(목)

주 : 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는 금융안정회의